

# 제규정관리규정

제정 2002. 6.  
개정 2012. 3. 1.  
개정 2016. 3. 1.  
개정 2016. 9. 19.  
개정 2017. 3. 1.  
개정 2019. 1. 21.  
개정 2019. 4. 29.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에서 시행하는 제규정의 제정, 개폐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본교에서 시행하는 제규정의 제정, 개폐 및 운용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3조(용어의 정의)** ①이 규정에서 제규정이라 함은 법령 및 정관에 준거하여 본교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규정, 시행세칙, 내규 등을 비롯한 모든 성문규범을 말한다.

②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인 방침 및 기준을 정한 체계적인 성문규범을 말한다.

③시행세칙이라 함은 학칙 및 규정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는 성문규범을 말한다.

④내규라 함은 외부에 공시함이 없이 사무처리의 부분적인 기준을 정한 체계적인 규범형식을 갖춘 문서를 말한다.

## 제2장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

**제4조(제정권자)** 제규정의 제정과 개폐는 총장이 한다. 다만 교원 및 직원의 보수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**제5조(효력)** ①제규정의 효력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시행일부터 발생한다.

②법령 또는 정관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.

③상위규정의 효력은 하위규정에 우선한다.

④현행규정이 신규정에 저촉될 때에는 그 저촉되는 부분은 신규정에 따른다.

**제6조(입안)** ①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입안은 업무소관 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제규정관리 담당부서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.

②제규정의 내용이 다른 부서와 상관될 경우는 그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.

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③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④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- ⑤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⑥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- ⑦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(별지 제1호 서식)

## 제규정 입안 및 심의 요청서

기본정보	규정명	
	소관부서	
	형식	규정(    ), 규칙(    ), 지침(    ), 시행세칙(    ) * 규정과 시행세칙이 동시에 개정 또는 제정되는 경우 한 번에 작성
	구분	개정(    ), 제정(    ), 폐지(    )
추진배경		
주요내용	가.  나.  다.	
붙임	가. 신 규정 나. 신·구 대조표	

제출일 : 20 . . .

부서장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인)

(별지 제2호 서식)

규 정 대 장						
일련번호	규정번호	소관부서	규정명	제정일	개정일	비 고